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5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서삼석·김동아·박용갑
김영진·윤준병·문대림
안도걸·신정훈·이병진
박수현·이원택·정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어항구역 내 무단 캠핑, 야영 등의 행위로 어촌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폐기물 등 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고 있음.

이에 관리 구역의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어항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한 무단 점유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국민 친수공간으로서 어항 시설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어항

무단 이용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 및 제62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무단으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제62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5조제6호를 위반하여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신설> 6. ~ 8. (생략)	제45조(금지행위)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무단으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u>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③ · ④ (생략)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제6호를 위반하여 <u>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 또는 야영 행위를 한 자</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